

광주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0나691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0나6913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가단52464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1)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현

담당변호사 홍영호

피고, 항소인 1.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맥

담당변호사 송진민, 이학선

변론 종결 2022. 4. 8.

판결 선고 2022. 4. 22.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가단524643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 (1) 피고 D과 F 사이에 2016. 9.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2) 피고 D은 F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 (1) 피고 E과 F 사이에 2016. 9.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2) 피고 E은 F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의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 및 제15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1) F은 2014. 8. 28. G(2016. 12.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15. 7. 31.까지 1,20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3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의 "1)"을 "2)"로, "망 G(2016. 12.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망인"이라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의 "2016가합2205호로" 다음에 "위"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7행의 "이 법원은"을 "위 법원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 및 제10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들은 그 무렵 자신들이 양수 내지 증여받은 위 각 주식에 관하여 각자의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 및 제12행의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를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 제4호증의 2, 제8 내지 10, 1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로 고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상속받은 망인의 F에 대한 약정금채권은 이 사건 주식매매 및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약정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 이 사건 주식매매 및 증여계약 체결 당시 F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 및 증여계약은 F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킴으로써 원고들을 비롯한 F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F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 및 증여계약 체결 당시 F이 매도한 소회 회사의 주식은 사실상 그 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 및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F의 재산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1. 24.자 2004마1022 결정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16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광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6. 6. 30. 및 2016. 12. 31.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소외 회사는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업종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수익은 부동산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부동산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이행되고 난 이후인 2017년경부터는 소외 회사의 자산총계가 부채총계를 초과하기 시작하였고, 2017. 1. 1.경부터 2017. 12. 31.의 당기순이익은 무려 2,926,501,555원에 이르렀던 점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 및 증여계약 체결 당시 F이 매도한 소외 회사의 주식의 가치가 사실상 없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D

피고는 소외 회사에 자신 및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명의로 약 1,600,000,000원 상당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운영 상태를 파악하고자 F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을 뿐, F의 채무 상태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사해의사도 없었다.

나) 피고 E

피고는 소외 회사에서 계약의 관리, 모델하우스 및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부친인 F으로부터 격려 등의 차원에서 주식을 증여받았을 뿐 사해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161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67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제5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피해자들에 대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매매 및 증여계약 체결 무렵에는 소송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통하여 망인으로부터 수차례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점, ② 피고 D은 F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K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은 F의 아들인바, 피고들은 F의 전반적인 경제 형편 등의 제반 상황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지위 내지 관계에 있었던 점, ③ 피고 D은 F 운영의 소외 회사에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설령 그러한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운영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굳이 주식까지 양수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들은 망인이 F을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지 불과 2~3개월 만에 F으로부터 주식을 양도 내지 증여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F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주식매매 및 증여계약은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은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E은 같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F에게 각 손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영아

판사김성흠

판사김효진

별지

1) 원고 C은 L생으로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성년에 이르렀다.